

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1.3.10		16		
2	2011.9.1		17		
3	2013.4.22.		18		
4	2014.4.22.		19		
5	2015.10.28		20		
6	2016.5.27		21		
7	2019.1.7		22		
8	2019.12.27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항공·경영대학원의 외국인 입학 전형과 기타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외국인) 외국인이란 대학원 학칙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9.1.>

제3조 (정원 외 입학) 본 규정 제2조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정원 외로 모집한다.

제4조 (지원)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박사학위과정 및 항공·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전기 또는 후기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4.22., 2019.12.27>

② 삭제 <2019.12.27>

제5조 (지원자격) 외국인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개정 2009.3.1., 2011.3.10.>

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개정 2009.3.1., 2011.3.10.>

제5조의2 (한국어 강좌) 학과 주임교수가 한국어구사 능력 부족으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교 한국어 교육원에서 1개학기 이상 한국어강좌를 이수케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9.1.]

제6조 (입학전형 서류) 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 2011.3.10.>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박사학위과정) 1부
4. 대학 성적증명서 1부
5. 대학원 성적증명서(박사학위과정) 1부
6. 출신대학 지도교수(학과장)의견서 또는 본 대학교 지도예정교수(주임교수) 의견서 1부 <개정 2016.5.27.>
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성적표 <개정 2009.3.1., 2011.9.1.>
 -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나. 본 대학교 국제문화원 한국어능력 4급 이상 <개정 2015.10.28.>
 - 다. TOEFL, IELTS 또는 TEPS 성적표 <개정 2013.4.22.>
 - 라. 삭제 <2013.4.22.>
8. 최종출신대학 학력확인서(봉인) 1부 <신설 2011.9.1.>

9. 예금잔고증명서 1부(해당자) <신설 2011.9.1.>

② 삭제 <2011.9.1.>

③ 제1항 제7호 제출서류의 경우 영어권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수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정부초청장학생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1.9.1., 2013.4.22.>

④ 삭제 <2009.3.1.>

⑤ 제1항 제7호의 예외조항으로 해당학과 어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교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지도예정교수(전임교원)의 “입학허가 추천서” 제출 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입학허가 추천서”를 통해 입학한 자는 논문청구 직전학기까지 해당학과 어학요건을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신설 2016.5.27.>

제7조 (입학전형) ① 외국인 지원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학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전형으로 선발한다. 단, 학과에서 필요 시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1.9.1., 2013.4.22., 2019.1.7.>

② 입학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등록금 및 장학금) ① 외국인 합격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학생에게 각 대학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7]

제9조 (외국인 등록) 입국이 완료된 외국인 학생은 입국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1. 한 학기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자

2. 출입국관리법과 국내법 위반자

3.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신설 2019.12.27>

4.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여 불미한 행동을 한 자 <신설 2019.12.27>

② 제적여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휴학) 외국인 학생의 휴학은 학칙 제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재학 중에는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삭제<2019.12.27>

②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제12조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학생이 학업상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체류연장신청서

2. 여권 신상내용 사본 1부

3.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4. 재학증명서 1부

제13조 (준용규정) 외국인 학생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2002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며,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6조제5항 2016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 1> 삭제 <2011.9.1>

<별첨양식 2> 삭제 <2011.9.1>